

##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 인사 규정 제4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은 해당 징계 등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승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고 직무에 종사하나, 승진을 제한하며 급여의 일정액을 감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기간 중 급여는 인사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대상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기간 중 급여는 보수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4. 강등은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직급을 한단계 강등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게 한다. 또한,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해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2022.03.30. 문구변경>
5. 면직은 회사와 직원과의 고용 내지 채용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따르는 의원면직, 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으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면직시킬 수 없다.

②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근무가 가능한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본조 제1항 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징계면직은 관련법령, 본 협약 또는 회사가 조합과 협의하여 만든 사규 등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④ 금품·향응수수, 배임 및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사회 봉사명령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명할 수 있다.

## □ 징계의 양정기준

○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5]

### 징계의 양정기준 (제59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중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행위 나. 기타 위반행위		면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기밀누설 금지 위반행위		면직	정직	감봉-견책
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행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행위		면직	정직	감봉-견책
6. 품위유지 의무위반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직장이탈행위		정직	감봉	견책
8. 질서문란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채용비위 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면 직 : 직원신분 박탈

강 등 : 1직급,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 직 : 1월~3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감 봉 : 1월~3월

견 책 : 훈계조치